

## 신용장 악의적 부가조건의 유형과 실무상 유의점\*

김희경\*\* · 박광서\*\*\*

- 
- I. 서론
  - II. 신용장의 본질과 악의적 부가조건에 관한 일반적 고찰
  - III. 신용장 악의적 부가조건의 유형
  - IV. 신용장 악의적 부가조건에 대한 실무상 유의점
  - V. 결론
- 

주제어 : 신용장, 보증신용장, 악의적 조건, 부가조건, 비서류적 조건

### I. 서론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무역결제에서 화환신용장의 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2%이다.<sup>1)</sup> 신용장의 사용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기준으로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송금방식(T/T)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무역결제 수단이며, 중요한 국제거래에서는 신용장의 사용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특히, 결제 대금의 규모가 크거나 혹은 결제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 외환 통제가 이루어지는 국가와의 거래, 그리고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기 때문에 거래선의 신용도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경우 등에서 신용장은 다른 무역결제 수단에 비

\* 이 논문은 2016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E-Mail : genhee@gmail.com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 kspark40@konkuk.ac.kr

1)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www.kita.net/>) 연도별 결제 방식별 무역 대금 비중.

하여 우위를 보이는 핵심적인 무역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신용장은 다른 무역결제 방식과 비교하여 결제에 대한 보장성과 법적안정성 및 범용성으로 인하여 널리 이용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타 결제 방식에 비해서 사용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신용장 개설의 근거가 되는 물품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sup>2)</sup> 신용장의 제반 조건들에 대하여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사용에 대한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신용장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악의적 부가조건 (malicious additional conditions)을 삽입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악의적 부가조건을 통하여 거래상의 우위를 시도하거나, 사기거래를 의도하는 매수인도 있다. 한편으로 일부 국가들은 매도인에게 불리한 부가조건을 통관의 필요요건으로 달아서 무역의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안전한 신용장거래를 위해서는 악의적 조건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신용장의 부가조건 혹은 특별조건에 대하여 악의성 여부를 판별하여 거래를 지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체계(judgmental framework)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업에서는 이러한 기준 체계를 잡기보다는 기존의 거래 경험과 관행에 의존하여 악의적 조건에 대한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실무경험과 숙련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수행된 악의적 조건 구별의 업무수행 관행을 넘어서 신용장의 악의적 부가조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체계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악의적 조건 및 이에 대한 해설을 단순하게 제공하였던 선행 연구에 추가하여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에 대한 보충 및 정리뿐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악의적 조건이 아닌 새로운 조건을 발견할 경우에 이러한 조건이 가지는 위험이 악의적인지 혹은 일반적인지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공함으로써 무역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에 무역업체의 애로사항 및 실무적 경험을 반영하는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대상으로 하는 신용장은 화환신용장과 일부의 보증신용장이다. 악의의 부가조건들이 화환신용장의 서류에 관한 부분과 보증신용장의 부당청구와 관련부분이 주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에서 사용되는 신용장 서식은 물론 관련 논문 등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무역업체, 무역유관기관 및 은행 등의 보고서와 상담자료 등을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2) Khademan, M.,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and related rule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A case for action", A Thesis submitted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Glasgow, 1996, p. 4.

## II. 신용장의 본질과 악의적 부가조건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 신용장의 본질과 서류거래

#### 1) 화환신용장의 본질과 서류심사 원칙

화환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서류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지급확약서이다. 따라서 신용장은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성의 원칙(UCP 제4조)이 적용되며, 물품이나 서비스 자체와는 무관하게 이를 상징하는 서류의 심사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추상성의 원칙(UCP 제5조)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기가능성이라는 한계성이 존재하는 것이 신용장의 본질이다. 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negotiation)하거나 선적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실제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제공된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심사하지 않으며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상의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엄격일치의 원칙(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sup>3)</sup>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제출된 서류와 신용장조건의 문면상의 일치여부, 어음금액, 송장금액과 신용장금액의 상호 일치여부, 상품의 명세단가 및 수량 등 기재의 일치여부, 보험서류의 종류 및 담보조건과 신용조건의 일치여부, 운송서류상의 선적일자가 선적기일 내인지 여부, 분할선적 및 환적의 경우 신용장조건과 일치여부, 각종 서류간의 상호일치 여부 기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는 비본질적인 오타나 사소한 글자의 누락도 문제를 삼는 것으로 많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은행에서 엄격일치의 원칙을 토대로 서류심사를 하고 있다.

반면에 상당일치의 원칙(Principle of Substantial Compliance)은 엄격한 서류심사를 완화하여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상당히 일치하면 은행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는 기존의 '상당한 주의(with reasonable care)를 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14조 제a항에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용장의 서류심사는 엄격일치가 원칙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3) Mofleh, A. I., "Abstract payment undertakings: To what extent are they truly abstract?", A Thesis submitted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Leicester, 2005, p. 10.

## 2) 보증신용장에서의 독립성과 추상성의 원칙

보증신용장은 취소불능하고, 독립적이고, 서류적이고, 개설된 때 구속력을 갖는 확약이다. 이러한 성격이 당해 보증신용장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SP98, 제1.06조 (a)항). 본질적으로 보증신용장이 기초를 두고 있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따라서 은행은 그러한 계약에 대한 여하한 참조사항이 신용장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러한 계약과는 무관하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 또는 수익자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주장하는 청구권 또는 항변에 지배받지 않고,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도록 독립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도 독립성은 신용장 법리의 기본원칙이다.<sup>4)</sup> 보증신용장은 성격상 기초가 되는 계약이나 입찰조건과는 별개의 거래로, 보증신용장상에 입찰조건에 대한 참조문언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기초계약 또는 입찰조건과는 관계가 없으며 그러한 계약조건에 구속 받지 않는다. 개설의뢰인은 반드시 보증신용장 하에서 수익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거래에 사기가 개입되지 않는 한, 기초계약뿐 아니라 개설신청 합의와 관련된 클레임 혹은 모든 분쟁과는 상관이 없다.<sup>5)</sup> 즉 보증신용장은 기초계약과는 별개라는 독립성의 원칙을 가진다.

추상성의 원칙은 서류를 통한 거래의 원칙을 말한다. 보증신용장의 지급메커니즘 혹은 지급조건과 관련하여 보증신용장은 추상성 혹은 문언성(documentary nature)을 갖는다. 즉, 보증인은 원채무의 실제와는 상관없이 수익자가 지급청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보증신용장의 문언상 조건과 일치한다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sup>6)</sup> 즉, 보증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중점으로 판단할 뿐, 기초계약 상의 원채무자와 수익자간에 발생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만약 보증신용장 개설은행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면 보증신용장의 독립보증으로서의 성격 유지를 힘들게 할 위험도 있다.

보증신용장에서 제시란 보증신용장상 요구되고 제시되는 서류의 접수(ISP 98, §3.02)를 제시로 보아서 서류의 제시가 기준이 된다. 이때, 일치성 심사는 제시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보증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대조하여 그 제시를 문면상 심사함으로써 결정(ISP 98, §4.04)되기 때문에 제시된 서류만의 심사를

4) Xiang Gao, *The fraud rule i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 a comparative study*,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p. 23.

5) 손명옥, “국제거래에서 독립보증상의 수익자의 부당청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8, p. 29.

6) 오원석·손명옥, “독립보증상의 수익자에 의한 부당청구(Unfair calling)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5, p. 137.

통하여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따라서 보증신용장은 그 성격이 서류적이며 추상적이다. 보증신용장개설의뢰인인 원채무자가 기초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수익자는 그 불이행의 결과로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의 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 2. 신용장의 악의적 부가조건

신용장 상의 조건들이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이유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이라는 본질에 기인한다.<sup>7)</sup> 신용장은 종종 비서류적 조건이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서류적 조건이라도 충족시키기 까다로운 서류 조건을 통하여 악의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신용장 서류의 사소한 오자나 표기 오류를 이용한 엄격일치의 기준을 가지고 거래에서의 우위를 가지고자 개설의뢰인이나 개설은행에이 의도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 1) 비서류적 조건의 악의적 이용

비서류적 조건은 제시되어야 할 서류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규정되어 있는 조건으로 서류비지정조건이라고도 부른다.<sup>8)</sup> 예를 들어 “선적은 15년 이하의 선령인 선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와 같은 조건으로 이러한 조건은 서류로써 증명되기 어려운 조건으로 대금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가 명기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에서는 조건을 충족하였는가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조건이며 은행에서는 이러한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하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나 개설은행 혹은 개설의뢰인의 경우에 악의적으로 혹은 관행적으로 이러한 비서류적 조건을 신용장 상에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비서류적 조건은 신용장통일규칙(UCP500)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sup>9)</sup> 규정되었으나, 한국의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서류적 조건에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10)</sup> 따라

7) Fohler, Gernot, “Fraud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and its Possible Arbitration”, A Thesis submitted for the Master of Laws(LL.M.), McGill University, 1999, p. 55.

8) 김영훈, “회환신용상 개설은행의 서류심사의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2, p. 58.

9) 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500, Article 13. A : ~ Documents not stipulated in the Credit will not be examined by banks. If they receive such documents, they shall return them to the presenter or pass them on without responsibility.

10) 석광현,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무역상무연구 제2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

서 광범위한 사적자치의 인정으로 여전히 악의적인 이용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모든 비서류적 조건이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비서류적 조건은 외관상으로는 비서류적 조건이나 신용장의 사용에 효력이 있는 조건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서류를 제시할 기간과 장소에 관한 조건은 서류로 명기될 수 없으나 은행의 매입/지급/결제/인수의 행동을 통하여 유효한 신용장 상의 조건으로 인정된다.<sup>11)</sup> 이를테면 “SHIPPING ADVICE SHOULD BE FAXED BEFORE THE SHIPMENT TO APPLICANT”와 같은 조항은 팩스가 송부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요구된다.<sup>12)</sup>

신용장에서 일반적 사항으로 기재된 선적항, 도착항, 선적일, 지정선사 등이 비서류적인 조건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러한 일반적인 조건은 신용장 상의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 혹은 다른 서류에 의해 연계되어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항들은 관련 서류를 신용장 상에 명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사항으로 간주되며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비서류적 조건으로 인지되는 유형의 조건들은 비록 필요 서류가 명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 2) 서류적 조건의 악의적 이용

일부 신용장 상에서 요구되는 서류적 조건의 경우, 정상적으로 요청되는 서류적 조건으로 신용장 상의 문구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구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거나 혹은 준비를 위하여 매수인의 추가적인 요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상업송장이나 원산지증명에 영사인증(Visa 혹은 Legalization)을 요청하였지만, 예멘이나 신생독립국가인 남수단(South Sudan)과 같이 우리나라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기 때문에 영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예멘 대사관이나 남수단 대사관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인증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신용장 상의 조건인 제시기일을 맞추지 못할 위험까지도 발생한다.

2, p. 161;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47443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5220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0299판결.

11) 상계논문, p. 156.

12) 박세운·허해관·정용혁·지정준, 국제표준은행관행(ISBP745) 공식번역 및 실무가이드,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한국금융연수원, 2013, p. 8.

“Inspection approval document from buyer’s agent is required”와 같은 조건의 경우, 매수인이 대리인을 조정하여 검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선적 및 이에 따른 신용장 매입/지급을 통한 현금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악의의 조건이다. 이와 같이 서류적 조건임에도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으므로 신용장 상의 문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 Ⅲ. 신용장 악의적 부가조건의 유형

신용장에서 주로 등장하는 악의적 조건의 유형을 매도인에게 끼치는 위협의 정도와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위험을 만들 수 있는 악의적 조건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대금 지급을 받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 둘째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 시키는 조건, 셋째로 복합적 악의의 조건과 마지막으로 매수인의 거래상 우위를 위한 기타 조건들을 들 수 있다. 복합적 악의의 조건은 조건 자체로는 악의적이 아닐 수 있으나 다른 상황과 연결되어 악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조건을 의미한다.

#### 1. 대금 지급과 관련된 악의적 조건

가장 최악의 위협은 제품의 선적을 완료한 후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대금지급의 문제(non-payment problem)에 따른 위험과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업적 위험을 방지하도록 신용장 상의 조건들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금을 지급 받는 것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은 대금 지급에 연결된 조건을 통하여 첫째, 대금을 지급 받기 어렵도록 하는 것과 둘째, 신용장의 효력이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대금 지급을 어렵도록 하는 조건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대금 지급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선적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제품을 선적하기 위한 자원과 이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이 있다.

신용장의 효력이 없도록 하는 조건의 경우, 대부분 선적이 진행되기 전에 문제점이 들어나나 제조업의 경우 선적이 진행되기 전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 생산을

진행하였을 것이므로 신용장의 효력이 없어서 선적 진행 및 이에 따른 대금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 1) 대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대금 지급을 어렵게 하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악의적 조건들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악의적 조건들을 수정(amend)하거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생산 및 선적을 진행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 NEGOTIATION IS SUBJECT TO OUR FURTHER INSTRUCTION<sup>13)</sup>
- PAYMENT SHALL BE EFFECTED AFTER SHIPMENT APPROVAL FROM THE APPLICANT<sup>14)</sup> · PAYMENT WILL BE MADE ONLY ON REALIZATION OF EXPORT PROCEEDS AGAINST L/C NO. XXX
- WE WILL PAY THE PROCEEDS UPON RECEIPT OF THE PRINCIPAL FROM THE FINAL BUYER
- 60% OF INVOICE VALUE AVAILABLE AT SIGHT AND REMAINDER TO BE NEGOTIATED UPON RECEIPT OF NOTICE FROM DRAWEE THAT THEY ARE SATISFIED WITH THE MERCHANDISE<sup>15)</sup>
- COMMERCIAL INVOICE MUST APPEAR ON ITS FACE TO BE SIGNED BY THE APPLICANT OR THEIR AGENT WITH THE SIGNATURE REGISTERED<sup>16)</sup> · PAYMENT OF DRAFTS DRAWN HEREUNDER WILL BE MADE ONLY AFTER THE REALIZATION OF THE RE-EXPORT PROCEEDS PROGRAM
- CLAIMS FOR REIMBURSEMENT WILL BE MADE ON THE L/C APPLICANT
- INSPECTION CERTIFICATE APPROVED AND SIGNED BY BUYER'S AGENT REQUIRED<sup>17)</sup>

13) 이제현, “신용장거래의 무역사기유형분석과 예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2. 6, p. 10.

14) 박광서, 무역결제, 제4판, 삼성사, 2017, pp. 128~129.

15) 남풍우·한상현, “신용장거래에서 악용되는 특별조건의 유형과 대응책”, 논문집 제33권, 강남대학교, 1999, p. 381.

16) 박광서, 전제서, pp. 128~129.

17) 한상현, “대중국 신용장거래에서 악용되는 특별조건의 제유형과 대응책: UCP 500의 適用을 中心으로”, 한국관세학회 학술발표대회, 1999. 12, p. 29.



예를 들어 “CLAIMS FOR REIMBURSEMENT WILL BE MADE ON THE L/C APPLICANT”의 경우, 매수인인 개설의뢰인이 신용장 사용을 고의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항이 된다. 이런 경우, 제품의 선적을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게 된다.

## 2) 신용장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

신용장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조건은 본질적으로 제조에 따른 위험과 연계되어 있다. 신용장의 문구를 통하여 조건부로 신용장의 효력이 생기는 (conditional operative), 개설의뢰인 혹은 개설은행에 의한 일방적인 수정이 가능하거나 (discretionary amendment), 개설의뢰인의 대리인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 사항 (agent approval)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조업의 경우 제품을 납품/선적하기 위하여는 개발, 구매, 생산 준비의 전 과정에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sup>18)</sup> 매수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을 시점에 신용장이 도래하였다면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생산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것은 신용장 상의 문제로 인하여 선적이 지연되거나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많은 자원이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이와 같은 신용장 효력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이다.

- THIS LETTER OF CREDIT IS OPERATIVE AFTER THE ISSUANCE OF PERFORMANCE BOND THAT IS EQUAL TO 10 PERCENT OF L/C VALUE AND MATURITY OF 1 YEAR WHICH IS ISSUED BY BENEFICIARY BEFORE THE LATEST SHIPMENT DATE<sup>19)</sup>
- L/C WILL BE OPERATIVE WHEN THE APPLICANT OBTAINS THE IMPORT LICENSE FROM THE AUTHORITIES<sup>20)</sup>
- THIS LETTER OF CREDIT IS OPERATIVE AFTER THE APPLICANT RECEIVES THE CONFIRMATION FROM THE FINAL USER<sup>21)</sup>
- THE APPLICANT HAS THE RIGHT TO AMEND THIS LETTER OF CREDIT UPON FURTHER NEGOTIATION
- L/C IS OPERATIVE AFTER THE APPROVAL FROM BUYER'S AGENT

18) 김연성·김성홍 외(역), Jacobs, F. Robert·Chase, Richard B.(저), 생산관리 : Operation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한경사, 2015, pp. 49~54.

19) 이집트 A사의 한국 S전자 개설 신용장 조건(2009).

20) 남풍우·한상현, 전계논문, p. 383.

“L/C IS OPERATIVE AFTER THE APPROVAL FROM BUYER’S AGENT”와 같은 조건의 경우, 신용장의 사용을 통한 대금의 결제에 매수인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신용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대금지불의 약속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 2. 추가비용과 관련된 경우

신용장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매수인은 때로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토록 신용장 상의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통해서 매수인은 본인을 위하여 일하는 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매도인이 지급토록 하고 있다. 매수인의 대리인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나 이것을 매도인에게 떠넘긴 악의적 조건으로 신용장 입수 시, 이런 종류의 합의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EVIDENCE TO PAY 5 PERCENT OF INVOICE VALUE AS A COMMISSION TO THE APPLICANT’S AGENT IS REQUIRED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에는 아래와 같이 선적전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 PSI)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선적전검사는 매수인의 대리인에 의한 검사인 경우는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검사에 따른 비용이 추가된다.

· INSPECTION APPROVAL FROM SGS IS REQUIRED<sup>21)</sup>  
· CERTIFICATE BY TUV OR ANY OTHER INTERNATIONAL TEST EQUIVALENT MUST BE INCLUDED

21) 박광서, 전게서, pp. 128~129.

22) Saudi Arabia U사의 한국 S전자 개설 화환신용장.

만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아닌 매수인의 대리인이나 매수인이 검사결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관을 통한 검사는 추가 비용 발생의 위험이 아닌 다른 차원의 위험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후술하는 기타 위험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검사증명서가 요청되는 이유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를 통한 외화 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우디와 같은 여러 개발도상국가에서 요청된다.

### 3. 복합적 악의의 경우

복합적 악의의 조건은 신용장 상의 조건으로만 보면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조건으로 판단이 되나 실무적으로 적용을 하면 악의적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신용장 상의 몇 가지 조건들이 조합 되면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류 제시기일 (period of presentation) 조건과 다른 조건들이 결합되는 경우나 신용장의 매입이나 대금청구를 위한 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용장 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은 Qatar에서 개설된 신용장<sup>23)</sup> 상의 조건으로 악의적 조건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러한 영사인증 요청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신용장 상에서 빈번히 요청된다.

· ADDITIONAL CONDITION  
 LEGALISATION OF ORIGINAL INVOICE AND CERTIFICATE OF ORIGIN, BY THE QATARI AUTHORITIES, WILL BE ARRANGED BY THE APPLICANT.

이러한 조건을 악의적 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Qatar의 경우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소재하여 관련 서류의 영사인증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사한 조건이 Yemen과 같이 우리나라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국가의 개설 신용장으로 요청된다면, 매도인은 서류조건 충족에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발생한다.

23) Qatar J사의 한국 T사 개설 화환신용장.

아래와 같은 조건의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를 보면,

· Letter of Credit from Yemen<sup>24)</sup>

PERIOD OF PRESENTATION : WITHIN 5 DAYS FROM SHIPMENT: ALL  
COMMERCIAL DOCUMENTS MUST BE LEGALIZED THROUGH YEMENI  
CONSULATE

서류 제시기일이 5일로 되어 있고 모든 서류는 예멘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다. 이런 경우, 예멘 영사관이 한국에는 있지 않고 일본에만 있는 관계로 서류를 일본에 우편으로 보내어 영사인증을 받는다면 제시기일인 5일 안에 영사인증까지 완료한 서류를 제시하기 어렵다. 더욱이 시간상의 문제로 일본에 직접 출장을 통하여 일본에서 영사인증을 진행한다고 하면 시간을 맞출 수 있을 지라도 직접 진행에 따른 비용의 과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환통제를 위한 수입 규제와 외환관리를 위하여 통관 서류를 까다롭게 요청하게 되며 이러한 조건들은 여러 가지의 용어로 추가조건에 명시된다. 다음의 경우 몇 가지 추가적인 예이다.

· VISA FOR COMMERCIAL INVOICE IS REQUIRED

· COMMERCIAL INVOICE AND CERTIFICATE OF ORIGIN NEED VISAS  
FROM CONSULAR SECTION IN EMBASSY.

이러한 복합적 조건은 매수인의 악의가 없더라도 매수인 국가의 정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악의적인지 아닌지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매수인의 악의가 아니라면 매수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충족하기 쉽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수출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국가 중, 우리나라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국가의 명단이다. 총 200개 이상의 수출국가 중 2017년 8월말 기준 111개국만이 대한민국 내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있다. 그러므로 신용장을 통지 받은 경우, 신용장 상의 조건을 면밀

24) Yemen Y사의 한국 F사 개설 화환신용장.

하게 검토해서 서류상의 영사인증 요건 충족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 명기된 국가 외에도 외교부 홈페이지의 주한공관장 List를 확인하여 서류상 조건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 우리나라에 대사관(영사관)이 없는 주요 무역대상국

기니(Guinea), 라이베리아(Liberia), 리투아니아(Lithuania), 몰타(Malta), 바레인(Bahrain), 바하마(Bahamas), 사이프러스(Cyprus), 시리아(Syria), 아이티(Haiti), 에스토니아(Estonia), 예멘(Yemen), 크로아티아(Croatia),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탄자니아(Tanzania), 토고(Togo), 트리니다드 토바고(Trinidad and Tobago) (이상 16개국, 가나다순)

\* 자료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외교부(www.mofa.go.kr) 자료를 가공.

#### 4. 기타의 경우

기타로 분류되는 악의적 조건은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거래적 우위를 만들기 위한 장치로서 신용장 상에 포함한 조건이나 사기성 거래를 위하여 포함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관계가 우호적이면 문제없으나 신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거래관계의 신용도가 높지 않은 경우는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조건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대표적인 악의적 조항들이 될 수 있다.

- THE NAME OF SHIP WILL BE INDICATED BY US.<sup>25)</sup>
- SHIPMENT MUST BE AFFECTED BY A VESSEL WHICH WILL BE ADVISED FROM BUYER BY CABLE BEFORE SHIPMENT.
- SHIPPING COMPANY IS NOMINATED BY APPLICANT THROUGH CABLE BEFORE SHIPMENT
- SHIPMENT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

“SHIPMENT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이 신용장 상의 조건으로 추가된 경우, 일반적인 매수인의 반응은 매수인의 편의를 위한 선적편 통지를 위한

25) 박광서, 전게서, pp. 128~129.

다고 언급할 것이나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을 위한 포장까지 완료했을 가능성이 크고, 매도인은 선적을 위한 비용을 들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만일 매수인이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면 이미 생산이 완료된 재고를 시장 상황이 변했으므로 가격을 인하해달라는 추가적인 요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러한 요청이 비합리적이고 비신사적임으로 알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타 조건들에 대하여도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중동 지역의 경우 중동지역 연합의 선사를 이용하도록 요청됨에 따라 선적일정 및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sup>26)</sup> 또한 중동 국가들의 이스라엘과의 적대관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중동계 선사가 아닌 선사를 사용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부가조건의 충족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 THE SHIPMENT SHALL BE EFFECTED THROUGH THE UNITED ARAB SHIPPING COMPANY'S VESSEL OR REGULAR LINER SERVICE VESSEL OR CONFERENCE LINE VESSELS OPERATING IN THE ARAB GULF REGION
- A CERTIFICATE FROM SHIPPING COMPANY OR THEIR AGENT STATING THAT SHIP IS ALLOWED BY ARAB AUTHORITIES TO CALL AT ARABIAN PORTS AND IS NOT SCHEDULED TO CALL AT ANY ISRAELI PORTS DURING ITS TRIP TO ARABIAN COUNTRIES, SHOULD ACCOMPANY THE DOCUMENTS (IN CASE OF SHIPMENT BY UNITED ARAB SHIPPING COMPANY VESSELS SUCH CERTIFICATE IS NOT REQUIRED)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선적전검사를 하는 검사자가 공신력이 있는 제3의 기관이 아니라 매수인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매수인의 대리인이나 공인기관이 아닌 일반회사인 경우에는 매수인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다. 문제가 없거나 사소한 경우임에도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사를 불합격시키고 불합격에 따른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매도인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가격인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위험한 조건들은 아래와 같은 문구로 일반적으로 표현된다.

26) 이태무, “중동지역 화환신용장 조건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연구 제20권 제2호,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1996, p. 191.

- INSPECTION CERTIFICATE APPROVED AND SIGNED BY BUYER'S AGENT REQUIRED
- APPROVAL CERTIFICATE OF PRESHIPMENT INSPECTION BY APPLICANT'S AGENT MUST BE INCLUDED

사기거래에 자주 사용되는 악의적 조건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신용장을 매입하거나 추심하는 경우, 사기(詐欺)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선하증권은 원본만이 효력을 가지는 유가증권(security)으로 선사가 화물을 화주(consignee)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의 원본을 반드시 선사에 제출토록 요청한다. 아래와 같이 원본 선하증권 1부를 매수인에게 보내는 경우, 매수인은 원본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취하고 은행을 통한 신용장의 대금 지급 요청은 거절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 BENEFICAIRY'S CERTIFICATE CERTIFYING THAT ONE SET OF SHIPPING DOCUMENTS INCLUDING 1/3 SET OF ORIGINAL B/L HAVE BEEN SENT TO XXX CO., LTD. BY COURIER WITHIN THREE DAYS AFTER SHIPMENT

제품을 항공화물로 선적하는 경우에는 화주(consignee)를 반드시 은행으로 해야만 매수인이 화물을 대금지급전에 수취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화주를 은행이 아닌 매수인으로 지정하면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본만으로 화물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화물만 수취하고 은행을 통한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다. 항공운송이 필요한 화물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건을 삭제 혹은 변경해야 한다.

- NAME OF CONSIGNEE IN AWB MUST BE XXX CO., LTD.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의한 악의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설은행에서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에서 금지한<sup>27)</sup> 사소한 문서오류(typo)에

27)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CC Pub. No. 745, A23) A misspelling or typing error that does not affect the meaning of a word or the sentence in which it occurs does not make a document discrepant.

대하여 엄격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문서오류를 근거로 대금지급을 거부하거나 하자수수료(discrepancy fee) 비용을 요구하는 조건을 신용장에 기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건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보다는 은행의 추가적인 수수료 수입을 기대하여 일부 은행에서 관행적으로 추가하는 악의의 조건이다.

· A DISCREPANCY FEE OF USD 75.00 SHOULD BE DEDUCTED FROM THE PROCEED FOR ALL DOCUMENTS NEGOTIATED WITH DISCREPANCY/IES DRAWN UNDER THIS CREDIT. NOTWITHSTANDING ANY INSTRUCTIONS TO THE CONTRARY, THE CHARGE SHOULD BE FOR ACCOUNT OF THE BENEFICIARY<sup>28)</sup>

#### IV. 신용장 악의적 부가조건에 대한 실무상 유의점

수익자가 내도된 신용장을 검토하여 악의적 조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악의적 조건을 삭제하거나 변경토록 수정(amend)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정을 위한 매수인의 협조가 용이한 상황이 아닌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악의적 조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대응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첫째, 신용장 대금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악의적 조건인지를 기준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악의적 조건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인지를 기준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거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지는 협상 우위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이러한 세부 기준에 맞추어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1. 수출대금 회수 가능성에 따른 대응

신용장을 이용한 대금 수령에서 대금지급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는 이미 제품의 선적을 진행하였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28) Indonesia B사의 한국 N사 개설 화환신용장.



소요되게 된다. 그러므로 대금지급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제품의 선적 전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금지급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위험도를 감수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닌 상황이다.

예를 들어 “70% OF INVOICE VALUE AVAILABLE AT SIGHT AND REMAINDER TO BE NEGOTIATED UPON RECEIPT OF NOTICE FROM DRAWEE THAT THEY ARE SATISFIED WITH MERCHANDISE”와 같이 30%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신용장의 경우, 30%의 대금에 대하여 보증 신용장 (Standby Credit)이나 청구보증(Demand Guarantee)을 받아 놓고 생산/선적을 진행한다면 위험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악의적 조건에는 현지의 사정이나 시장상황 등의 그럴듯한 핑계와 결부되는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금 지급의 위험에는 견고한 설득 논리를 가지고 수정 혹은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 2. 추가비용 소요에 따른 대응

악의적 조건을 통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토록 하는 것,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 것, 서류 인증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판매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언급되지 않았던 비용이 발생하는 악의적 조건이 신용장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악의적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 단지 비용만이고 대금지급의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발생하는 비용이 제품을 판매하여 생기는 이익과 발생 비용의 정도를 비교하여 악의적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래단절을 각오하고 수정을 요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익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은 산업별, 기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구분은 어려우나 2016년 결산 기준 우리나라 상장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7.4%<sup>29)</sup> 임을 감안하여 발생비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이 30%인 거래에서 3% 수준의 매수인의 대리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비용의 문제가 아닌 대금지급의 문제가 되는 악의적 조항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9) 한국상장사협의회 자료 <http://www.klca.or.kr/>

한국일보 2017-4-4 <http://www.hankookilbo.com/v/bf54aafb0c854552b4880bdc24baf864>

### 3. 거래 위험도에 따른 대응

거래 위험도는 매수인의 신용도 및 이에 따른 거래 지속여부가 기준이 된다. 거래를 시작하는 신규 매수인에 대한 위험도는 높다. 특히, 개발도상국 회사들의 경우 신용도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대로 신규로 거래를 하는 회사라고 해도 국영회사거나 신용도가 높은 회사의 경우는 거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용도와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의 선적전검사는 위험도가 낮으며 일반적으로 처음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선적전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선적전검사는 검사를 통해서 가지게 될 거래관계의 우위를 기준으로 악의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실제로, 이집트의 국영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회사의 직원이 파견을 나와서 선적전검사를 진행하여 합격을 하는 경우에 선적을 하도록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구매회사의 선적전검사가 악의적 조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국영회사이고 중동/아프리카의 회사들의 경우 선적전 방문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악의적 조건을 감수하고 진행하였다.

사기업의 거래에도 매수인에서 선적전검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많으며 이러한 요청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협의가 되거나 재고 발생의 위험도를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 4. 협상력 발휘 가능성에 따른 대응

무역거래에서 위험도가 없는 거래는 존재하기 어렵다. 아무리 작은 위험이라도 위험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선금을 받은 경우라도 수입국가의 별도 규격에 따른 현지화를 위한 개발비용이나 별도포장비용 등과 같이 거래를 시작하는 시점에 고려하지 않았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신용장 상의 악의적 조건으로 명기 될 수 있다.

이러한 악의적 조건을 위험(risk)으로 감안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거래를 할지에 대한 결정 여부는 자사가 가지는 협상 우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만일 판매하는 제품이 경쟁력이 있고 다른 경쟁자와 차별화되었다면 악의적 조건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악의적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THE NAME OF VESSEL WILL BE INDICATED BY THE APPLICANT”

와 같은 악의적 조건의 경우에 거래선의 편리를 위하여 요청된 것이라면 협상력이 약한 매도인의 경우는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V. 결 론

신용장의 악의적 부가조건은 다양한 형태로 신용장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악의적 조건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수정(amend)을 요청하여야만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신용장의 악의적 부가조건은 대금지급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신용장 상의 문제라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신용장을 통한 대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시점이 생산 혹은 선적준비까지 완료한 후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래관계의 단절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대금결제 수단으로 신용장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서 다음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첫째, 대금 지급을 받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들이 들어있는지, 둘째,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 시키는 조건들이 들어있는지, 셋째, 개별적으로는 큰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악의의 조건으로 되는 조건들이 들어있는지, 마지막으로 매수인의 거래상 우위를 위한 기타 조건들이 들어있는지를 검토하여 악의적 조건이 가지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구상해야 하며, 대응방안은 다음의 단계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수출대금의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응하며, 둘째, 추가비용이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고, 셋째, 거래 위험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협상력 발휘 가능성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구성한다.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 매수인에게 악의적 조건의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이 된 후에 선적 및 거래를 지속할 수 있을지 판단한다. 수정이 불가하다면 신용장 상의 악의적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개설의뢰인에게 반대급부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우려되지만 위험을 감수하며 거래를 할지에 대한 단계적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용장 방식은 범용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송금방식과 대비하여 사용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화한 회사 담당자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따른 교육 기회도 많이 주어져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연성 · 김성홍 외(역), Jacobs, F. Robert · Chase, Richard B.(지), 생산관리 : Operation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한경사, 2015.
- 김영훈, “화환신용상 개설은행의 서류심사의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2.
- 남풍우 · 한상현, “신용상거래에서 악용되는 특별조건의 유형과 대응책”, 논문집 제33권, 강남대학교, 1999.
- 박광서, 무역결제, 제4판, 삼영사, 2017.
- 박세운 · 허해관 · 정용혁 · 지정준, 국제표준은행관행(ISBP745) 공식번역 및 실무 가이드, 대한상공회의소 · ICC Korea · 한국금융연수원, 2013.
- 석광현,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무역상무연구 제2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 2.
- 오원석 · 손명옥, “독립보증상의 수익자에 의한 부당청구(Unfair calling)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5.
- 이제현, “신용장거래의 무역사기유형분석과 예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2. 6.
- 한상현, “대중국 신용장거래에서 악용되는 특별조건의 제유형과 대응책: UCP 500의 適用을 中心으로”, 한국관세학회 학술발표대회, 1999. 12.
- 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 600.
-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ICC Publication No. 745.
- Fohler, Gernot, “Fraud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and its Possible Arbitration”, A Thesis submitted for the Master of Laws(LL.M.), McGill University, 1999.
- Khademan, M.,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and related rule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A case for action”, A Thesis submitted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Glasgow, 1996.
- Mofleh, A. I., “Abstract payment undertakings: To what extent are they truly abstract?”, A Thesis submitted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Leicester, 2005.
- Xian Gao, *The fraud rule i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 a comparative study*,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 ABSTRACT

### Classification and Practical Consequences of Malicious Additional Conditions from Letter of Credit

Hee-Kyung KIM · Kwang-So PARK

If additional condition in letter of credit is used in malicious way, it affects the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in jeopardy. Therefore, it's significant to identify whether additional conditions are malicious or ordinary in the transaction with letter of credit.

In normal cases, thanks to lots of useful features as an international payment method, such as security of payment, legal protection, and versatility, a letter of credit is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even with these advantageous features, a letter of credit is complicate and costly to use, compared to other payment methods.

Furthermore, due to its principle of independence from underlying contract, a use of letter of credit creates another type of concern for proper handling and needs significant caution upon field use.

At some points, malicious additional conditions are used for buyer's advantage in deal making and fraud instance in worst situation. In addition, some countries request malicious conditions against sellers as a non-tariff barrier. Therefore it's extremely important to recognize whether malicious additional condition exists in letter of credit and, if so, how to deal with it.

This study delivers the information to distinguish and categorize the malicious conditions in various cases and to figure out how to deal with them for safer trade with less risk.

Keywords : Malicious Additional Conditions, Letter of Credit, Standby Credit,  
Non-Documentary Condition